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3. .
제 출 자 : 권중현의원외 2인

1.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2003. 1. 7 대통령령 제17881호)이 개정되어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실소요액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인상됨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분과 기 조정된 일비 지급 기준,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국외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 및 기 조정된 일비인상분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정비

구 분	등 급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의 장 부의장	가	25$→35$ 인상	137$→166$ 인상
	나	25$→35$ 인상	99$→120$ 인상
	다	25$→35$ 인상	76$→ 92$ 인상
	라	25$→35$ 인상	65$→ 79$ 인상
의 원	가	20$→30$ 인상	120$→145$ 인상
	나	20$→30$ 인상	78$→ 95$ 인상
	다	20$→30$ 인상	58$→ 70$ 인상
	라	20$→30$ 인상	51$→ 62$ 인상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별표4),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가 나 다 라	1등정액	실비액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140	170	195
의 원	가 나 다 라	2등정액	실비액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130	155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 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코,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트투갈,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바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 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현 행										개 정 안									
구분	등급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구분	등급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가 나 다 라	1등 정액	실비액	**25** **25** **25** **25**	**137** **99** **76** **65**	107 78 58 49	140	170	195	의 장 부의장	가 나 다 라	·	·	**35** **35** **35** **35**	**166** **120** **92** **79**	· · · ·	·	·	·
의 원	가 나 다 라	2등 정액	실비액	**20** **20** **20** **20**	**120** **78** **58** **51**	81 59 44 37	130	155	180	의 원	가 나 다 라	·	·	**30** **30** **30** **30**	**145** **95** **70** **62**	· · · ·	·	·	·